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A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related to AI(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김재현¹

Jae-hyun Kim¹

요약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 여부는 기술의 발전 수준과 인간의 개입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데이터마이닝의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영리목적의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인공지능 연구가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영리적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 데이터마이닝, 공정이용

Abstract

There are two copyright issues related to AI(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there is a claim that AI creations are not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system which only covers human creations, while there is a claim that protection of AI creations is needed through the preparation of new legal system to protect investment in related industries and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Protection of AI creation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of technology and the degree of human intervention. Second, it concerns copyright infringement that occurs in the data mining stag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unclear whether data mining is exempted by the fair use provis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industry, full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cluding data mining exemption was proposed. Although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evision even allows profit use, this can be a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AI research is often conducted through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profit and non profit purposes in reality.

Keyword : AI(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protection, Data mining, Fair use

¹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jose2001@daum.net

Received(July 16, 2021), Review Result(1st: August 6, 2021), Accepted(August 13, 2021), Published(August 31,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및 인쇄술의 도입으로 저작권이 탄생된 이후 다양한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권리가 확대되었다. 복제권 및 배포권에서 시작하여 공연권, 방송권 등으로 확대되었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송권이 도입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라는 또 하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한 번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3D 프린팅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 기술로 단순히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스스로 학습 및 인지추론을 할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을 창작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창작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게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은 현재 법체계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많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는 인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간을 저작권침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둘째, 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에 관한 것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이 필수적이다. 데이터마이닝은 수많은 정보의 디지털화를 필요로 하며 디지털화되는 정보에는 보호대상인 저작물도 포함될 수 있다. 사전 이용허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디지털화에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도록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과다로 딥러닝은 불가능한 것이며 인공지능 산업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사업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시기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권법 체계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누가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최근 발의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데이터마이닝 관련조항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는 1956년 미국의 전산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미국 다트머스 대학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시스템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인간의 지적능력을 구현하는 과학기술로서,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 논리로 판단·행동하며, 감성적·창의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약한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하여 특정 분야 문제를 인간처럼 풀 수 있으나 인공지능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을 이해하는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강한 인공지능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어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지각력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1].

IBM은 1989년부터 딥소트(Deep Thought), 딥블루(Deep Blue), 디퍼블루(Deeper Blue)라는 체스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인간 챔피언과 대결하였으며, 왓슨(Watson)이라는 자연언어 처리 인공지능을 만들어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을 압도하기도 하였다. 구글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명한 알파고(AlphaGo)는 자가 대국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바둑 프로그램이며, 사진을 보고 상황인식이 가능한 구글 브레인, 그림을 그리는 구글 딥드림 등도 구글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델란드의 델프트과기대·렘브란트미술관 등이 공동으로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기술인 넥스트 렘브란트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2].



[그림 1]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드림이 반 고흐 화풍을 학습하여 그린 그림

[Fig. 1] Picture painted by Google Deepdream learning Van Gogh's painting style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중심의 약한 인공지능 수준이며, 인간과 같은 지적 수준을 갖춘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종류에 따라 창작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 및 인간의 개입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종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컴퓨터나 사진기와 마찬가지로 단지 인간의 지적 창작의 도구로 이용된 경우와 인간이 역할이 최소화되고 인공지능이 창작 전 과정을 진행하고 창작 결과물도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3.1 보호필요성에 관한 논의

3.1.1 보호찬성론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저작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 의미를 부여한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제도의 목적이 권리자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촉진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어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에 관계없이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저작권법 취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3].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 인공지능이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를 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간이 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공지능 창작에 투명한 산업계 종사자에게 불합리하며 나아가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에 적극적인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종사자를 역차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인간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수요가 집중되어 오히려 인간의 창작이 위축될 수도 있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인공지능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 투자보호의 필요성 간에 조화를 꾀하고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대신에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을 침해의 요건으로 하여 저작권자의 창작을 사실상 그대로 복제한 경우만 침해에 해당하고 구제방안에서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낮은 수준의 ‘약한 저작권 보

호(Thin copyright protection)'를 제안하였다. 또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의 예외로 인공지능 창작물을 등록하고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해서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는 방안,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인간 창작물 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방안,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기 보다는 보상금 지급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안 등도 인공지능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

3.1.2 보호반대론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를 부정하는 입장은 저작권 제도는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공지능 창작물까지 법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면 향후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인공지능 창작물 속에서 인간의 권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 한다 [2]. 현행 저작권법도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을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표현된 창작활동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제도를 정당화 하는 이론 중 하나인 자연권이론에 따를 때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로크의 노동이론에 의할 때 인공지능이 창작에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노동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 창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4]. 한편,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공지능은 자율성 정도에 따라 주어진 조건하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의 약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기술은 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권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창작이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것이나 몇몇 학자들은 강한 인공지능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한다 [3]. 오히려, 인간의 창작행위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을 헌법·법률, 법원의 판결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과 같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자에 관한 논의

3.2.1 인공지능 자체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경우, 인공지능을 그 작품의 저작권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견해이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할 만큼 독립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체계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창작을 장려하여 문화발전을 도모함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 [5]. 또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되어 있는 창작물의 보호기간도 문제가 되며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나 양도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간 이론으로 사회적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2.2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의견으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한 동작 버튼만으로 창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으므로 그 출력물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창의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개발자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는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하지만 인공지능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였다면 개발자에게 그 기여를 인정할 수 없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작물의 저작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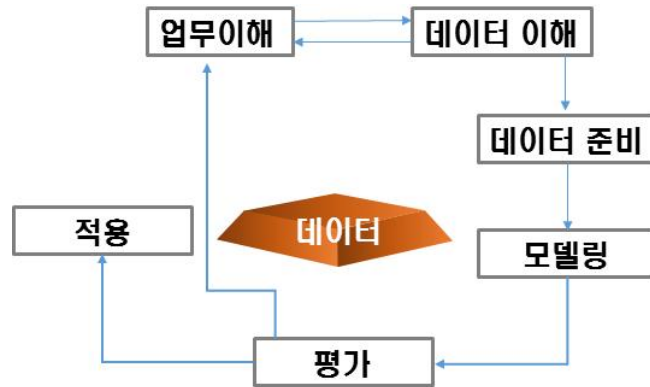
3.2.3 인공지능 이용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권자로 보는 견해이다. 인공지능 이용자가 색채나 붓의 크기, 스트로크 스타일 등과 같은 채색도구를 선택하고 일정 요건을 입력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그림의 최종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 창작물에 기여를 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라는 저작권법상 요건에 부합하며,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이용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하여 공공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지시가 단순해지고 컴퓨터의 역할이 더 커져갈 경우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7].

4.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 침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란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8].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딥러닝 등 컴퓨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량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어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사전허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도록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과다로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인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데이터마이닝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림 2]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데이터마이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Fig. 2] is Data mining Procedures for AI development

4.1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데이터마이닝의 결과물은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에 내재된 정보나 아이디어만을 추출하는 것이지만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저작물이 서버에 저장되는데 이것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일시적 복제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서버라는 물리적 공간에 일시적이라도 저장되는 것은 저작권법상 유형물로의 고정인 복제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 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마이닝이 동조항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임시성 또는 휘발성을 가지는 램(RAM)에 저장되거나 캐시의 경우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술적으로 삭제되거나 갱신되도록 되어 있다면 일시적 복제로 볼 수 있다 [9]. 그러나 인공지능 관련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일시성을 벗어난 복제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적 복제 관련 저작권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10].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시행되는 복제행위가 새로운 창작을 위한 중간복제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11]. 공정이용 원칙(Fair use doctrine)은 저작권자가 독점적 권리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저작권법이 장려하는 창작성을 억제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일반적 공정이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고려요소로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 등이 그 저작물의 현재 가치나 잠재적인 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논란이 되는 요소는 주로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목적 이용인 경우 공정이용 원칙에 해당되나 영리목적 이용의 경우 공정이용 원칙 적용이 어렵고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물의 대체하여 시장가치를 위협하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따라서 불확정 개념에 의존하여 저작권 제한규정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만으로 데이터 마이닝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

데이터마이닝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이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호)을 대표 발의하였다 [13].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첫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 등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한 목적 및 필요한 범위에서만 동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과 균형을 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 1] 저작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중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규정

[Table 1] Data mining provision of the Revised bill of Copyright law

<p>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p> <p>①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p>
--

본 개정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향유를 금지하여 인간이 분석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데이터 마이닝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저작물을 저작물로서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집합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 분석에 참여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을 규정하여 해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한 복제는 배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대량의 정보 분석에 한정된 것은 소수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자의 승인 하에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면책 대상에 전송권까지 포함시킨 것은 정보 분석과정의 경우, 여러 기관이나 장소에 분산된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송행위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 제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 범위를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였다. 한편에서 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이 영리목적에도 적용되어 권리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영리적 목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후속 이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조직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복제에서는 영리적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을 불문하고 면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이념상 인공지능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체계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발달 이전에 확립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 패러다임이 신기술에 발맞추어 적시에 나아가지 못할 경우, 저작권법이 신기술 발달과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 얽매이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수준과 인간의 개입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술은 인간의 개입정도가 낮은 약한 인공지능 수준으로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낮고 인간이 창작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컴퓨터 등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인공지능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고 인간의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누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것인지는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아직 강한 인공지능 시대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이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논의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입지가 좁아지는 인간 창작자에 대한 배려이다. 인공지능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순간 인간 창작자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시 일 자리를 잃어가는 예술가들까지 함께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게 된다. 이는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나 ‘공정이용’의 범리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업자의 불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 있어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면책규정이 포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목적에도 이러한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비록 영리목적 이용과 비영리목적 이용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Y. M. Ki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issues :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of AI-created works”,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2016-005, June 2016, https://spri.kr/posts/view/17485?code=issue_reports&page=7.
- [2] S. W. Son, “Copyright protec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generated works”,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vol. 20 no. 3, December 2016, pp 88-107.
- [3] J. Y. Han, “Trend of AI creation and copyright granting according to the contribution of the creators”, 2021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March 19, 2021, Seoul, Korea, pp 93-111.
- [4] H. W. Lee, “The Copyright Law in the Era of ‘Techno Creatura’: Regarding Authorship and Copyright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Generated Works”, The Justice, vol. 158, no. 1, February 2017, pp 132-159.
- [5] H. K. Kim, “Study on the Copyright Authorship and the Works Cre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ungKyunKwan Law Review, vol. 29, no. 1, march 2017, pp 331-374.
- [6] S. J. Jung, “Copyright Challenges Fac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Quarterly, vol. 31, no. 2. June

2018, pp. 37-72.

- [7] J. G. Lee, "Author of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islative Implementations",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vol. 29, no. 2, January 2019, pp. 491-537.
- [8] K. S. Kim, "A critical study on TDM in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2021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March 19, 2021, Seoul, Korea, pp 145-160.
- [9] H. W. Lee, "Copyright law", Pakyounsa, 2017.
- [10] C. H. Shin, "Mass Digitization of Copyrighted Work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ungKyunKwan Law Review*, vol. 31, no. 1, March 2019, pp. 143-176.
- [11] S. Y. Ch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w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the Copyright Law-",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 66, no. 3, June 2017, pp. 183-235.
- [12] H. K. Park,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able Works in Machine Learning",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 23, no. 1, February 2020, pp. 129-152.
- [13] "Bill Information, National Assembly", likms.assembly.go.kr,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 (accessed Jun 10, 2021).